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합52384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6. 9. 30.

판결 선고2016. 11. 2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755,729원과 그 중 106,986,356원에 대하여는 2016. 1. 18.부터, 152,493,446원에 대하여 2015. 12. 21.부터, 86,820,071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64,036,072원에 대하여는 2015. 11. 30.부터 각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15. 7. 29.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5. 7. 29. 접수 D로 마친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주식회사 A,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각 2015. 7. 29.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 B에게 위 각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5. 7. 29. 접수 E로 마친

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4. 가. 피고 주식회사 A,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2015. 7. 29.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 B에게 위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5. 7. 29. 접수 F로 마친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1) 아래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은 그 무렵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대출금을 대출받았다(이하 순번에 따라 아래 각 대출금을 '제○대출금'이라 한다).

1	2010. 6. 22.	162,000,000원	90%	2018. 6. 22.-	중소기업진흥공단	180,000,000원
2	2013. 1. 15.	150,000,000원	100%	2014. 1. 15.2016. 1. 15.	주식회사 하나은행	150,000,000원
3	2014. 7. 31.	85,000,000원	85%	2015. 7. 31.-	주식회사 국민은행	100,000,000원
4	2015. 6. 15.	63,000,000원	90%	2016. 6. 15.-	주식회사 하나은행	70,000,000원

2) 피고 A은 그 당시 원고가 어느 하나의 신용보증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은 때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0%)로 계산한 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15. 7. 17. 제2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5. 7. 20.

제3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각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다. 1) 피고 A은 2015. 7. 29.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는 같은 날 위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5. 7. 29. 접수 D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2) 피고 A, B은 2015. 7. 29.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는 같은 날 위 각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5. 7. 29. 접수 E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3) 피고 A, B은 2015. 7. 29.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위 각 양도계약을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는 같은 날 위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5. 7. 29. 접수 F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4)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은 피고 A,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라. 1) 원고는 2016. 1. 18.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1대출금채무 106,986,356원, 2015. 12. 21. 하나은행에 제2대출금채무 152,493,446원, 2015. 11. 26. 국민은행에 제3대출금채무 86,820,071원, 2015. 11. 30. 하나은행에 제4대출금채무 64,036,07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2,574,020원을 지출하고, 1,391,000원을

회수하여 위 비용 지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원본 변제에 충당하였다.

3)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합계 236,76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755,729원[= 보증채무이행으로 인한
구상금 410,335,945원(= 106,986,356원 + 152,493,446원 + 86,820,071원 + 64,036,072원)
+ 권리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 지출로 인한 구상금 1,183,020원(= 2,574,020원 - 1,391,000원) +
추가보증료 236,764원]과 그 중 제1대출금 보증채무이행금액 106,986,356원에 대하여는
보증채무이행일인 2016. 1. 18.부터, 제2대출금 보증채무이행금액 152,493,446원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인 2015. 12. 21.부터, 제3대출금 보증채무이행금액 86,820,071원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인 2015. 11. 26.부터, 제4대출금 보증채무이행금액 64,036,072원에 대하여는
보증채무이행일인 2015. 11. 30.부터 각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18.까지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손해금을,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하나은행의 2015. 7. 17.자 신용보증사고통지와 국민은행의 2015. 7. 20.자
신용보증사고통지에 따라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당시 제1 내지 4 각 대출금 잔액 상당의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각 양도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피고 A, B의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피고 A, B이 피고 C에 대한 58,472,193원(= 미지급 급여 42,606,353원 + 퇴직금 15,865,840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대물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은 피고 A, B이 유일한 재산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 악의

채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상회복으로, ①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5. 7. 29. 접수 D로 마친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A, B에게 ㉠ 별지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5. 7. 29. 접수 E로 마친 이전등록과 ㉡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5. 7. 29. 접수 F로 마친 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수영

판사김진희

판사박재민

별지